

박대동 의원, 하도급관련 불공정사례 지적



박대동 의원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울산 북구)은 지난 10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련 불공정사례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대동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사채무에 대해 어음 만기일까지 대금지급을 보증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건설공제조합 및 보증보험사 약관은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만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대동 의원은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고 공정위에서 표준하도급계

약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특정 기관의 보증서만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손해발생시 실제손해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특정기관의 보증서만을 요구하는 행태는 면밀히 파악해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책임 범위를 손실에 상당한 금액으로 명시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정이나 기타 하위법규 등 어느 것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